제13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주제토론마당

"우리 반, 우리 학교에 꼭 있다"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성

폭력과 교사·학교의 역할

목 차

주제토론마당 운영 계획3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6
우리 반 학생이 나에게 커밍아웃했다28
초등교사인 내가 성소수자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31
우리반 '그/녀'와 어떻게 만날까? ······38

제13회 전국참교육실대회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성 폭력과 교사학교의 역할」 주제토론마당 운영 계획

1. 취지와 목표

-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처한 현실을 진단한다.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예방하고, 더불어 살기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 변화 방향과 가치, 교육 실천 방안 등을 모색한다.
 -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후 교육활동을 공유한다.

2. 방향과 내용

몇 년 전 남자고등학교에서 목소리를 가늘게 내고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걸레년', '뚱녀'라는 욕설을 듣고, 몸이 조금만 스쳐도 '더듬더라'는 소문이 나고,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당시 나이가 15살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단 괴롭힘에 취약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교 안에서 빈번 하게 이루어지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듣는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고,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여도 누군가에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동성애혐오로 인한 학교폭력을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교사는 어떻게 그/녀들을 만나면 좋을지, 국가나 지자체 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성소수자 당사자학생의 목소리와 현장에서 실천해온 선생님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3. 주제토론마당 운영 계획

"우리 반, 우리 학교에 꼭 있다"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성 폭력과 교사·학교의 역할

주최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일시 : 2014년 1월 15일(수) 2시~5시 30분

장소 : 한신대학교

1부 :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생활 살펴보기

[발제1]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 바람&오렌지(청소년 성소수자,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자긍심팀)

[발제2] 부산 학교폭력 사건을 통해 본 혐오성 폭력과 대안

- 조혜인(희망을만드는법, 부산 학교폭력사건 소송대리인)

2부 :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과 함께 살아가기

[발제3] 우리반 학생이 나에게 커밍아웃했다

- 이윤승(중등교사)

[발제4] 초등교사인 내가 성소수자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

- 이기규(초등교사)

[발제5] 우리반 '그/녀'와 어떻게 만날까?

- 모리(동성애자인권연대)

3부: 종합토론

순서	토론자	내용
기조발제(10분)	바람(청소년 성소수자)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1
기조발제(10분)	오렌지(청소년 성소수자)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2
기조발제(15분)	조혜인(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부산 학교폭력 사건을 통해 본 혐오성 폭력과 대안
지정토론(15분)	이윤승(서울 이화미디어고)	우리반 학생이 나에게 커밍아웃했다: 중등교사로서 성소수자 학생 만나기
지정토론(15분)	이기규(서울 수송초)	초등교사인 내가 성소수자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
지정토론(15분)	모리(동성애자인권연대)	우리반 '그/녀'와 어떻게 만날까?: 성소수자 학생 상담 방안
종합토론(90분)	참여자 모두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성 폭력, 어떻게 맞설 것인가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해외 정책 및 사례를 중심으로 ¹⁾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부산학교폭력사건 소송대리인)

1. 2009년 부산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2009년 남자고등학교에서 목소리를 가늘게 내고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걸레년', '뚱녀'라는 욕설을 듣고, 몸이 조금만 스쳐도 '더듬더라'는 소문이 나고,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학생은 당시 나이가 15살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2013년 7월 26일, 학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1심(재판장 조양희)은 담임교사가 피해학생과의 상담과 학생이 작성한 메모와 경위서들을 통해 집단괴롭힘 사실과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상태, 자살의 가능성을 인지하였고, 청소년 정신건강, 우울척도 및 자살생각척도 검사 결과, 피해학생이 심한 불안, 우울 상태를 보였고 자살 충동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에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한 채 피해학생의 동성애적 성향 및 우울감을 알리면서 전학을 권고하는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였으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이해와 관용을 교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학생이 반 학생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난경우 피해학생의 예민함과 동성애적 성향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학생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려했던 점, 그 결과 집단괴롭힘이 학기 초부터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를 때까지 어느 정도 계속하여 지속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부산광역시는 담임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피해학생과 부모들의 잘못도 참작하여 부산광역시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하였다(부산지방

¹⁾ 본 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발간한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툴 번역)를 많이 참고하였으며, 기타 국내외문헌 리서치 및 번역 등 공감 자원활동가 김지연씨, 하준영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2012. 5. 24. 선고. 2011가합24176 판결).

반면에, 대법원은 1심을 원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망인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없고, 망인이 일요일에 가출하여 다음날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그날 22:00경 자신의 집지하실에서 자살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인식 부재

대법원의 판결은 학교폭력에 처해진 소수자학생의 취약성, 집단따돌림의 유형인 정신적, 심리적 공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할 학교의 역할을 너무 소홀하게 판단한 것이다.

►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역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상황을 악화시켰다.

담임교사는 학기초반에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을 도와주려고 했으나, 점차 괴롭힘의 원인이 피해학생의 예민함과 여성스러운 행동 때문이라고 보고, 피해학생을 변화시키거나 전학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담임교사는 2009년 7월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피해학생의 성정체성 혼란에 대하여 병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담임교사 주장에 의하면 교장, 교감, 학생부장 교사에게 보고하고 의논한 결과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이 힘들어하니 전학 권유를 하자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 "OO이는 친하자고 한 행동이었는데 OO이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한 상태였기 때문에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하거나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면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명이 하였다." (담임교사)
- "데스리스트에 적힌 말들은 다른 학생들도 농담처럼 많이 듣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들어서 괴로워하는 OO이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 (담임교사)
 - "자신의 여성스런 행동으로 인해 주변 인간관계에 미칠 영향을 그리고 친구들의 입장에

서도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해 왜 친구들이 괴롭히는지. 새학기 되기 전에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같이 궁리", "아버지 어머니 학교 내교하여 상담, 부모님께서 인정하기 힘들었으나 XX이에게 사귀자고 한 쪽지를 얘기했더니 수긍하시고 같이 서서히 가치관 변화를위해 노력하자고 했음"(상담교사)

▶ 교사들의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

-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학기 초인 3월 초순경 피해학생과 중학교 때 같은 반 학생의 학부모였다는 같은 학년 담임인 동료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중학교 시절 남학생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음.
- 피해학생은 2009년 6월 담임교사에게 상담요청을 하여 반 학생들과 친해지기 힘들고 학교생활이 답답하므로 학교에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는 등의 고민상담을 하기도함.
- 담임교사는 2009년 7월 피해학생의 여성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학생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였고, 상담 이틀 후 피해학생이 지각을 하였고 교실에서 심하게 울었다고 함
-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실시한 BDI(우울척도검사)에서 '심한 우울 상태'를 보였고, SSI-BECK(자살생각척도검사)에서 '자살 충동 매우 많음'으로 나타났으며, BAI(불안검사)에서 는 총점 38점으로 '극심한 불안상태'로 나타났지만 담임교사는 위 결과를 부모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해학생이 2009년 9월 작성한 메모에, '걸레년, 개새끼'라는 욕을 들었던 내용, XXX이 발을 계속 올려서 OOO이 발을 내리라고 친 것을 '더듬는다'라고 헛소문을 만들었다는 내용, 일부 학생들이 OOO에게 "뚱녀", "다 빠게진 년", "걸레년" 등 욕설을 하고, 수업시간에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괴롭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죽이겠다는 대상반 학생 10명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음. 담임교사는 부모들을 불러 이 사건 메모 및 피해학생이 XXX에게 사귀자고 한 쪽지내용과 그런 소문이 학교 내에 널리 퍼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을 권유함.
- 피해학생이 2009. 10. 1. 교실에서 XXX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담임교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경위서와 반성문을 작성하게 함. 피해학생은 반성문 앞면에는 '다 제가 잘못한 일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저의 불찰로 일어났으니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라고 작성하고, 부모님 확인란에 아버지의 'OO이 교칙을 잘 지켜라. 남자다운 행동을 해라'라고 받음.
- 피해학생이 2009년 11월 자살하기 4일 전날 5교시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학교에서 무단으로 조퇴, 담임교사는 무단조퇴에 대한 경위서만 받음.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교시를 그냥 보냈습니다. 처음에 저도 제가 해놓을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었는데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

게 할 만한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그런것 쯤은 어느정도 참는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참기 힘들어서 무단으로 조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를 나가서 먼저 한 것은 길거리에서 몇분정도 울다가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저는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차 례로 오시고 저는 또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음 주부터 올라오셔서 상담하고 가신다고 하 셨습니다. 끝내 저는 이기적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작성함.

- 피해학생은 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등교를 하지 않은 채 방황하다가 그 날 밤 10시경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어 자살함.

2)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부족

▶ 학생들의 적대적 태도

피해학생이 자신이 작성한 메모에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언급한 같은 반 학생들이 이 사건 이후에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피해학생의 사소한 행동에도 성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 거나,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저는 OO의 평소 행동이 너무 보기 싫어서 결국 춤을 출 때나, 수업 중 두 손으로 볼을 가리거나, 손가락을 베베 꼬는 등 귀여운 척을 할 때마다 욕설을 섞었다."(A)
- "한 번씩 OOO이 막 내가 엎드려 자고 있는데 몸을 더듬고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를 해서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참은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나는 남자인 걔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너무 불결하고 싫었다."(B)
- "선생님께 쪽지를 드리고 나서도 OOO은 계속 집적대고, 찌르고, 만지고, 쪽지하고 등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1학기 동안 쭉 참아왔던 분노와 짜증, 혐오감 등을 참지 못하고 OOO을 밀었습니다. OOO이 더 때려보라고 화를 돋와서 5대 정도 더 때리고 말았습니다."(C)
- "1학기 시작 후 2주 후에 팔짱을 끼어서 그 행동이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하고, 6월경 OOO이 남자답지 않게 귀걸이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OOO에게 보기 싫다고 놀렸다."(D)
- "9월 전, 선생님께서 순위가 적힌 종이를 준 후에 그와 나는 대화를 일체 안하였다. OOO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놀고 있으면 뒤에서 막 어깨를 만지작거린다던지, 옆구리를 만진다던지, 검지로 옆구리나 몸을 찌르는 행동을 자주 했다. 그리고 가끔씩 멀뚱멀뚱바라볼 때가 있었다. 몸을 만지길래 하지 말라했고, 계속 하길래 욕을 했으며"(E)
- "난 OOO한테 OOO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달라, 단지 친구라는 입장에서 '어떤 행동은 좀 아닌 것 같다'와 비슷한 말들을 했다. 그리고 난 오히려 OOO이 몰래 내 옆에 와서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하여 짜증이 났다. 그리고 OOO이 나한테 성적 행동을 했을 때(옆에서 찌른 다거나지는) 하지 말라고 하면 막 정색을 해서 오히려 날 당황하게 만들었다"(F)

- "일반 친구들과 같이 말장난을 주고받다가 OOO의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거나 하면 팔짱을 끼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가슴, 배를 찌르는 이상한 행동도 하였다. 그리고 체육복을 교실 아무데서나 갈아입거나 하면 몸을 아래위로 훑어보기도 하였고, 여름에 반바지 체육복을 입고 앉아있으면 종아리나 허벅지 안쪽까지 더듬는 행동을 하였고..(중략).. 내가 군대 얘기에 대해 묻거나(근대를 가냐? 등), 성에 관한 얘기(트랜스젠더 등)를 하거나 하면 정강이를 차기도 하였다"(G)
- "초읍중 나왔던 어떤 애가 OOO이 게이라고 말해서 본인에게 놀렸었는데..(중략)..OO이가 엎드려 있으면 뒤에서 껴안고, 팔짱을 끼고, 가슴,다리,등,사타구니 쪽을 만져서 기분이 나빠 욕한 적도 있었다. 자살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항상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자주 충고 해주었고.."(H)
- "OOO이 평소에 여자들이 추는 춤과 여자 같은 행동, 예를 들어서 여자 그룹들이 추는 춤들을 야자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평소에 추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그 춤을 좋아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고, 나는 그냥 춤 좀 그만 추라고 말하였다. 애들이 다 싫어하는데 왜 추냐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박수칠 때도 그런 면을 애들이 다 싫어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OOO을 위해서라도 해준 얘기이다."(I)
- "OOO에게 비꼬는 듯한 말을 하게 된 것은, OOO이 이상한 행동을 하여서입니다. 이상한 행동은 팔짱을 끼고,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수업시간에 뒤에서 찌르고, 털 뽑아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하지 말라고 팔짱을 풀면 쫓아오고, 잡으면 팔뚝을 웃으면서 때렸습니다. 이 행동을 할 때마다 게이냐고, 여자랑도 안 해 본 것을 남자랑 했다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좀 냈습니다. 선생님과 OOO 때문에 상담하고 난 뒤, 보면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J)

▶ 부모에게 피해학생의 성정체성 누설(아웃팅)

- 담임교사는 2009년 7월 피해학생의 여성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학생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였고, 상담 이틀 후 피해학생이 지각을 하였고 교실에서 심하게 울었다고 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4조 제1항과 제28조 제8항의 모순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환경

한국의 경우 남학교/여학교로 분리된 학교가 여전히 많아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규범이 강화되며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학생은 바지교복, 여학생은 치마교복을 입어야 하는 등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나, '전형'적인 성별규범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 관련법령 및 국제인권기준

「헌법」제31조 제1항, 제 1948년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의 교육차별철폐협약에 의하여, 모든 학생들은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권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두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국제연합 국제조약 감시기구들은 유권해석인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차별금지조항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항'을 이유로 한 차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2003년의 청소년들의 건강과 증진에 대한 일반논평 4호에서 '차별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남용과 폭력, 착취에 더 취약해서 그들의 건강과 증진이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 특별한 주의와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이행상황정기보고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게,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가운데 하나로서 '따돌림'을 예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1의2호에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²⁾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RC/C/KOR/CO/3-4), 2011년 10월 6일6 October 2011,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집단따돌림(집단괴롭힘)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7.11.15.선고2005다16034판결, 대법원 2013.7.26.선고 2013다203215 판결), 헌법재판소는 1999.3.25.선고98헌마3030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집단괴롭힘'이란 '이는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족한 상대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거나 반복하여 고통을 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1항 학생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제28조는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해외 정책 및 사례소개3)

1) 동성애혐오성 괴롭힘(homophobic bullying)4)의 심각성과 중대성

'동성애혐오성 괴롭힘'(homophobic bullying)5)은 특정 젠더에 편향된 괴롭힘으로, 실제나 외

³⁾ 이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발간한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참고. 이 책은 유네스코 주관으로 2011년 12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최초의 '교육기관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관한 유엔 국제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와 경험이 토대가 되었으며, 당시 전 세계 25개국 이상에서 온 교육부, 유엔기구, NGO, 학자 등 대표들이 모인 회의였다.

⁴⁾ 본 글에서 용어의 간결성을 위하여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당하는 학교폭력은, 엄밀히 말하면 트랜스젠더혐오성 괴롭힘이라고 하며, 협의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공통적인 특징도 있지만 별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어려움들도 경험하고 있다.

⁵⁾ 즉, 실제로 성소수자이거나 실제로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외견상 성소수자로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괴

견상 보이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actu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특정 젠더에 편향된 괴롭힘을 말한다. 여러 나라의 연구결과에서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보다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놀림, 인신공격, 공공연한 조롱, 소문 퍼뜨리기, 협박, 밀거나 때리기, 소지품을 훔치거나 망가뜨리기, 사회적 고립, 사이버괴롭힘,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살해 위협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단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소수자라고 파악된 학생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 내 괴롭힘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2006년 '유엔 아동폭력에 관한 세계보고서'에서는 괴롭힘이 심각한 교육상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을 포함하여, 주류의 성규범과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누구나가 성과 젠더를 이유로 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학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우울, 불안, 자신감 상실, 위축, 사회적 고립, 죄의식, 수면장애 등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고,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해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자살하는 일도 더 많다.

2)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개입

교육기관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싸우는 것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있이 달라질 것이다. 이 예시들은 대부분 선진국 사례이지만,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활동의 기 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실태조사, 근거자료 수집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규모와 특징,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교육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모아 근거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종합적인 전국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덕분에 교육부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또한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전국자살방지전략(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의 주요 대상군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롭힘을 모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교사교육과 학교교과과정

교사교육과 학교교과과정의 주요과목의 교재와 내용을 검토하여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요소들을 제거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한 헌법, 법률, 차별금지 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며, 평등법(Equality Act 2000)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범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육부 소속의 '교육에서의 사회통합과 평등부서(Social Cohesion and Equity in Education Unit)'가 담당한 과제의 하나는 교육제도 내에서 헌법적 가치를 높이는 것. 2011년에는 학교 운영책임자들을 위한 교육매뉴얼 〈행동하는 가치(Values in Action)〉를 발간하였는데, 그 중한 섹션이 성적지향에 대한 내용이었다. 2005년에는 전국종교지도자포럼(National Religious Leaders Forum)과 공동으로 '교사지침서: 책임감 있고 인도적인 학교문화 조성하기(Building a culture of responsibility and humanity in our schools A guide for teachers)'를 발간 하였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

▶ 특별히 교육부문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응하는 정책

대만 젠더평등교육법(Gender Equity Education Act 2003)에서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고, 젠더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교과과정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내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게이, 트렌스젠더, 임신한 학생들을 '취약한' 학생으로 보고 특별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교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박스: 트렌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모범적 교육구 정책

미국의 GLSEN은 모범적 교육구 정책을 개발하여, 성별정체성이나 젠더표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포용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책임 각 교육구와 학교는 트랜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차별이나 폭력 또는 괴롭힘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리며 학생과 교사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해신고가 있을 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차별, 괴롭힘, 폭력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이름과 복장 학생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불릴 권리

가 있다. 또 학교의 복장규칙 범위 내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 교직원은 트랜스젠더나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엄격하게 학교복장규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 성별분리 공간 및 활동 학생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화장실을 선택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적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공식 기록 학교 기록이나 문서에 학생의 법적 이름과 성별을 기재해야 하는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는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성별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문서가 아닌 학생증에는 학생이 원하는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사생활과 비밀보호 학생을 포함하여 누구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인 사실이 학교에서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해당 교육구는 트랜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과 관련된 모든 의료기록을 해당 주, 지방,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교직원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나 해당 학생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드러날수 있는 학생의 정보를 부모나 타학교 직원 등 제삼자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트랜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젠더표현을 드러내 이야기하고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 누구와, 어느 정도로 자신의 사적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결정할권리를 가진다.
- 연수와 전문보수교육 교육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모든 관련 교직원이 괴롭힘, 폭력, 차별을 예방하고 발견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보수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수 있는데, 다음의 내용이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괴롭힘 방지 전략 괴롭힘을 중지시키는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전략 괴롭힘의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복잡한 상호관계와 힘의 불균형에 관한 정보 트랜스젠더나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과 같이 특히 학교 내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된 특정 학생집단에 대한 정보 등 괴롭힘에 대한 연구결과들 사이버괴롭힘의 발생빈도와 특징 및 사이버괴롭힘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안전문제들에 관한 정보.

3)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개입

▶ 학교의 괴롭힘 금지 정책

학교의 괴롭힘금지 정책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보호가 포함-> 이런 정책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동성애혐오성 발언을 듣는 일이 더 적고, 성적지향과 연관된 피해를 경

험했더라도 그 정도가 더 약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 교직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학생들 역시 괴롭힘금지 정책이 일반적이거나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 괴롭힘이나 폭력 사건을 교직원에게 보고하는 일이 더 많-> 이러한 정책의 홍보와 시행은 학생들이보다 안전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는 것, 동성애혐오적 욕설이나 폭력을 덜 당하고, 자신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포용의 공간으로 학교를 바로볼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동성애혐오 때문에 자해를 생각하거나 감행할 확률과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할 확률을 아주 크게 감소시킨다.

박스: 효과적으로 괴롭힘을 방지하는 학교 정책과 프로그램의 특징

- 아동의 태도와 행동이 고착되기 전, 아직 어릴 때 시작합니다.
-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워이 괴롭힘방지 정책 안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 교장, 교직원, 학생, 부모,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학교의 괴롭힘방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게 합니다.
- 교직원 교육과 적절한 외부전문인력 활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예방전략을 개발합니다.
-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징계를 결정하고, 가해자를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명확한 행동계획을 정책 속에 반드시 포함합니다.
- 학교 내 또는 지역 내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 비밀신고제도를 구축합니다.
- 모든 교직원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나서고, 모든 형태의 괴롭힘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 교직원지침서, 학교안내서, 참관행사, 학부모회의 등 안에서 괴롭힘방지 정책이 눈에 띄게 합니다.
- 학생들의 행동을, 특히 괴롭힘이 일어난 것 같은 증거가 있을 때,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학교의 다양성 정책 평가 도구 개발

네덜란드의 단체는 학교의 다양성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학교 다양성정책 진단 체크리스트

1. **학교 비전.** 학교가 다양성과 차별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교직원이 이를 알고 고취한다.

- 2. 괴롭힘 및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비전 공유. 부적절한 행동, 폭력, 일반적 인 괴롭힘과, 특별히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하고 근절할지 학교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교직원이 이를 알고 고취한다.
- 3. 젠더에 관한 교육.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남녀평등대우를 가르치고 정형화된 성역할에 문제제기 한다.
- 4. 차별에 관한 교육.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람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차별에 관한 수업을 제공하다.
- 5. 부적절한 행동에 즉각 대응. 교직원은 부적절한 행동과 동성애혐오성 발언을 즉시 교정하며, 학교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명확하게 합의된 방침을 가지고 있다.
- 6. 동성애혐오에 대한 단호한 거부. 부적절한 행동이 용인될 수 없음을, 특히 성적지 향이나 외견상 보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학생이나 교사가 차별하거나, 괴롭히 거나, 인신공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힌다. 부적절한 행동을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설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 7. 문제에 대처할 상담교사.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상담교사 또는 멘토가 학교에 있다. 상담교사를 찾는 학생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일 수도 있고, 동성애혐오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대응방법을 배우고 행동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다.
- 8. 체계적인 정책. 학교관리자는 부적절한 행동의 예방과 억제, 다양성 존중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자, 교직원, 학생의 인식을 높이고 활동을 이끌어내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계획은 학교안전, 시민의식, 긍정적 사회행동, 차별금지라는 더 넓은 범위의 정책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 9. 학생들을 위한 지원. 자신의 성적지향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방법에는 도덕적 지지, 정보제공, 또래지지에 대한 토의, 학교행정상 성명과 성별의 정정,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화장실 배정, 공동샤

워장 이용에 따른 불편함 해소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0. 학교개선운동에 대한 지원. 학교관리자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Gay Straight Alliances)'를 만들 것을 장려한다.

▶ 교사와 교직원의 역할

교사도 한 개인으로서는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가치와 신념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어서,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해 의식적든 무의식적으로든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 것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교사들이 다른 형태의 괴롭힘에 비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열의, 자신감, 지식, 태도, 기술에 따라 동성애혐오성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의 효과가 달라지고,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도 있고, 동성애혐오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교육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교사교육은 임용 전이나 재직 중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임용 전 교육은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과 협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 인권, 포용, 차별금지
-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문제와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다양성에 대한 기본 지식
- 개인적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숙고와 언어 사용이나 수업방식이 어떤 식으로 동성애혐오와 차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숙고
- 강의방법, 학습도구, 실제 교실활동 등 기술과 역량
- 비차별적 교육방식
- 현실성 있는 활동계획
- 교실이나 학교환경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방지와 대응
- 어렵고 대립적인 상황,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종교적 주장,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학생들, 비판적인 학부모나 지역사회 지도자, 동료교사나 학교운영진의 지원부족 등의 난제에 대응하기

▶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 제고 및 지지환경의 조성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므로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 학교환경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 논의하여 고양하고자 하는 가치를 찾고 명확한 규칙과 책임을 정립하고, 학교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나 발언을 하는 것을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직원교육을 통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해 인식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개입해야 하는지 교육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밀신고절차를 수립하고, 괴롭힘의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방관학생에 대한 지원을 모두 마련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교내에서 안전하지 못한 장소들을 찾아내고, 복도, 학교근교, 체육시설, 쉬는시간 등 교실 밖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잘 훈련된 교직원이나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상담이나 멘토링서비스를 구축하거나,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중재서비스나 또래지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 상황을 감안해서, 비폭력, 인권기반, 아동보호, 성소수자 NGO와 같은 적절한 지지집단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전문성있는 NGO 위탁하는 체계를만들고, 교육기관에서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NGO인 콜롬비아 디버사(Colombia Diversa)는 보고타와 메델린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동성애혐오 및 관련된 괴롭힘 사례들을 기록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높이고, 시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성적 다양성과 젠더 다양성에 대한 교육용비디오와 같은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전국캠페인 NGO 'BeLonG To'가 실시한 캠페인. 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 뿐 아니라 폭넓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캠페인에 대한 교장과 교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고, "학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 교과과정의 통합

이상적인 교과과정에는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야할 뿐 아니라, 강의 및 학습자료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에 대한 좋은 예를 포함시키는 포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 생활기술교육에 통합
- 성교육이나 보건교육에 통합
- 인권 교육이나, 시민성 교육 또는 국민윤리 교육에 통합하는 방법
-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사회 등 다양한 교과목에서 주류에 편입시키는 방법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에서는 포괄적인 교육과정이 되려면 정보, 가치, 태도 및 사회적 규범, 대인관계 및 인간관계 기술, 책임감을 포함하도록 권고. 정보에는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치, 태도, 규범에는 관용, 존중, 인권, 평등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책임감에 대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상대방의 건강상태나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존중, 수용, 관용, 공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권장한다.

▶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

■ 괴롭힘을 당한 학생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반복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사, 부모, 또래집단의 지지와 더불어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 괴롭힘을 방관하거나 목격한 학생

괴롭힘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목격자가 된다. 이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개입하고 사건을 신고하도록 교육과 역량강화가 필요.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괴롭힘이 멈추도록 서로 도와주는 행동이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며, 이런 학생들이 보복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목격자는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괴롭힘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을 경우 보통 괴롭힘을 용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 이처럼 목격자가 가해자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인식하여, 예를 들어 '캐나다 안전학교 네트워크(Canadian Safe Schools Network)'에서는 학생들에게 옆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학생들은 대부분 개입할 용기가 없거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개입하는 경우 그 효과가 어른이 개입하는 경우보다 크고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그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가 어떤 형태의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다.

■ 괴롭힘의 가해학생

괴롭힘의 가해학생에게는 벌칙을 집행하는 것과 더불어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 가해학생이 사회성을 기르도록 돕고, 협동적인 학습에 참여시키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힘을 행사할 기회를 주고, 또래집단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는 깨닫도록 도와주어야한다. 이와 같은 상담과 지원을 할 자원이나 훈련된 인력이 없는 학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외부자원을 찾아보고 위탁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3. 미국의 유사한 사례 및 해결 과정

1) Seth Walsh 사건

2010년 9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Seth Walsh(당시 나이 13세)가 수 년 간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하다가 집 주변의 나무에 목을 맨 채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9일 뒤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 교육부와 미국 법무무의 연방 수사국의 침해조사가 파견한 연방 수사관은 캘리포니타 주 테하치피 교육당국이 Seth와 그의 가족이 제기한 신고사항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대응하지도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Seth의 가족과 친구들, Seth의 학교 교직원 및 75명 이상의 급우들과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보고서에 따르면, Seth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또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것은 "그의 교육을 방해" 하여 Seth로 하여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Wendy Walsh는 2011년 7월, 캘리포니아 주 테하차피 지역의 교육당국을 상대로 1972년의 교육 개정법(Education Amendment Act of 1972)의 Title IX, 미국연방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캘리포니아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 221.5 - 231.5, 교육법(Education Act)의 성 평등 조항 등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6)

소송 이후 2011년 9월 3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교내 집단괴롭힘 방지법(일명 Seth's Law)가 통과되었다.7) 이 법안은 동성애혐오성 학교폭력의 희생자 Seth Walsh의 이름을 따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주 의회 의원인 Tom Ammiano(민주당, 샌프란시스코)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역 교육 단체(local educational agencies)가 장애, 성별(gender),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국적, 민족 혹은 인종, 종교, 성적지향성 혹은 위의 특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perceived) 사람 혹은 그룹과의 연계성에 근거한 차별

⁶⁾ 소장 원문: http://cdn.lgbtqnation.com/wp-content/uploads/2011/07/walsh-lawsuit.pdf

http://www.lgbtqnation.com/2011/09/california-senate-approves-seths-law-aimed-at-reducing-anti-gay-bullying/

(discrimination), 괴롭힘(harassment), 겁주기(intimidation) 및 집단따돌림(bullying)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교육부에서 감시하도록 함. 교육구 감독관의 관할 아래 있는 학교 내의 학교 활동 혹은 학교 출석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정책.

2. 위의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 괴롭힘, 접주기, 집단따돌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는 절차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교육부에서 감시하도록 함. 이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학교 직원이 차별, 괴롭힘, 겁주기, 집단따돌림 현장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것을 막기 위한 즉각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무화함(단, 그렇게 해도 안전할 경우)
- 차별, 괴롭힘, 접주기, 집단따돌림 불만 신고를 수사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정 표
 - 신고자가 불만 신고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탄원(appeal) 절차를 제공
 - 반차별, 반괴롭힘,반-겁주기,반집단따돌림 정책을 학생들, 학부모, 교직원, 위원회 직원 및 일반 대중에게 광고할 것, 여기에는 불만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
 - 이 정책을 모든 학교와 사무실에 휴게실과 학생회실을 포함하여 공지할 것.
 - 신고자가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할 것과 신고자의 신원 기밀을 유지할 것.
 - 지역 교육 단체의 직원을 구별해서 규정들을 반드시 이행하게 할 책임을 줄 것.
- 3. 교육부는 편견과 관련이 있는 교내의 차별, 괴롭힘, 겁주기 및 집단따돌림을 다루는 정책을 설명한 유인물을 만들어 적합한 웹 사이트에 공지해야 한다.
- 4. 감독관(Superintendent)은 자신의 웹 사이트 및 각 교육구에 학교에 기반한 (school-based) 차별, 괴롭힘, 겁주기 혹은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된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돕는 지역 기반 단체들의 목록을 공개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 5. 이 법안은 학생의 자유 발언권을 제한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6. 이 법안은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다.

2) 미네소타 주 Anoka-Hennepin District의 사례

Anoka-Hennepin 교육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여섯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5년 동안 성적지향과 관련한 '중립정책(neutrality policy)'을 수정하고 반괴롭힘(anti-harassment)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2010년 15세의 나이로 자살한 Justin Aaberg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지역에서 9명의 학생이 자살한 일련의 사건이 이 소송의 계기가 되었다. 합의내용에는 집단따돌림 및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의 고용, 집단따돌림 신고 건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총괄적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의 시행 및 진행 여부는 연방정부에서 감시할 예정이다. 만일 교육구가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합의명령"은 무효가 되며, 판사는 교육구가 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8)

미네소타 주 법원의 화해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9)

정의

A. "괴롭힘"(harassment)은 모욕적 언어, 겁주기, 협박을 포함한다;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및/또는 신체적 폭력, 또는 낙서(graffiti), 사진 또는 그림, 쪽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글 등에 모욕적인 언어 및 그림을 사용하는 행위 및/또는 보호 대상(protected class)의 신분에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B. "성(sex)에 근거한 괴롭힘"은 성적인 괴롭힘(sexual harassment)과 성별(gender)에 근 거한 괴롭힘을 모두 포함한다.

- 1. "성적인 괴롭힘"은 성적인 기반(sexual nature)의 괴롭힘을 의미한다.
- 2.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은 개인의 성(sex)으로 인한 성적인 괴롭힘이 아닌 괴롭힘을 의미하며,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에 근거한 괴롭힘을 의미한다.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은 괴롭히는 사람 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실제 또는 인지되는 성(actual or perceived sex), 성별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성별고정관념 비순응 (person's nonconformity with gender stereotypes)에 근거한 괴롭힘을 포함하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C. "성별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 D. "성적지향성"은 그 개인의 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신체적 또는 성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이러한 애착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개인의 생물학적

⁸⁾ 기사 원문 링크:

http://blogs.citypages.com/blotter/2012/03/anoka-hennepin_settles_lawsuit_with_bullied_students.php 9) 법원 명령 원문:

http://www.scribd.com/fullscreen/84113453?access_key=key=ju6re5e6pim8o6rp205

남성성이나 여성성과 전통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자아상 또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네소타 법 § 363A.03,세부 항목 44.

E. "성적지향성에 근거한 괴롭힘"은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되는 성적지향성, 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또는 트랜스젠더("LGBT")인 사람 또는 그룹(예: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과의 연관성이나 지지하는 행동으로 인한, 성적인 괴롭힘이 아닌 괴롭힘을 의미한다.

F. 이 화해명령의 우선적인 목적은 성에 근거한 괴롭힘 및 성적지향성을 근거로 한 괴롭힘을 다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화해명령의 목적을 위해서, "괴롭힘"(harassment)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위에서 정의한 성에 근거한 괴롭힘 및 성적지향성을 근거로 한 괴롭힘을 의미한다.

G. "적대적 환경"은 괴롭힘이 충분히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만연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얻을 능력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제한을 받을 때 존재한다.

교육 및 전문성 신장

- 1. 교육구는 평등자문위원, Title IX 총괄책임자, 평등총괄책임자와 협력하여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개선하고 추가할 사항을 우수 운영사례와 일관성 있게 검토하고 조언할 것이다. 이 교육은 필수 과정이 되어야 하며 교육구는 예정된 교육 일정을 놓친 모든 학생 또는 직원이 반드시 시기적절하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2. 교육구는 매년 모든 학생들에게 괴롭힘에 관련하여 나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되, 계속해서 제공해야 하며, 매년 예정된 교육을 놓친 학생이 보충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12년 9월 1일까지 평등자문위원은 교육구의 학생용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언해야 한다. 평등자문위원이 학생 교육 내용에 관련해 조언하는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 a. 학생들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존중, 특별히 괴롭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sex)과 성별(gender)에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되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별고정관념 비순응을 포함할 것.
 - b. 6-12학년의 학생들에게는:
 - i.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 유형에 관한 지침으로, 괴롭힘으로 간주 될 수 있는 행동들의 각기 다른 유형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를 사용;
 - ii. 이러한 괴롭힘이 학생들과 교육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가르침;

- iii. 학생들이 경험하였거나 목격하였거나 알았거나 인지하게 된 괴롭힘에, 가 능한 신고 방법을 포함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련한 정보;
- iv. 교사들, 관리자들 및 직원들이 목격한 괴롭힘 사건이나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련한 정보;
- v. 자신의 급우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논의, 교육구와 교육구 내의 모든 학교는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 한 모든 사건을 지적할 것임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할 것;
- vi. Title IX 총괄책임자 소개 및 그 역할에 대한 설명; 그리고 vii. 평등총괄책임자 소개 및 그 역할에 대한 설명.
- c.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는, 모든 학생들에게 배타적이지 않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지침으로, 집단따돌림과 폭력의 방지와 관련한 주제를 포함.
- 3. 교육구는 모든 교사 및 관리자들에게 괴롭힘에 관련한 교육을 매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매년 예정된 교육을 놓친 직원들에게 보충 교육을 수강하도록 해야 한다. 2012년 7월 1일까지 평등자문위원은 교육구의 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련한 개선 사항을 검토 및 조언해야 한다. 교육구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든 직원들이 매년 의무 연수를 받을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연수 내용에 관한 평등자문위원의 조언은 다음을 포함하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행동의 유형에 관한 깊이 있는 지침으로, 특별히 성에 근거한 괴롭힘 및 성적지향성에 근거한 괴롭힘의 예시를 다룰 것,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이 학생들, 직원들 및 교육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
 - b. 학생들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존중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이러한 논의는 다음의 주제를 포함할 것이다: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별 고정관념 비순응 정도, 성적지향성;
 - c. 괴롭힘의 근본적 이유 및 이러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해악에 관련한 촉진된 (facilitated) 논의;
 - d. 모든 학생들, 특별히 성별 고정관념에 순응하지 않는/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또는 트랜스젠더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차별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도 및 논의 단계;
 - e. 교육구 및 그 직원들이 모든 괴롭힘에 대응 및 괴롭힘을 중단시킬 효과적 행동을 취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괴롭힘으로 인한 영향을 적절히 처리할 책임에 강조를 둔 수정된 괴롭힘 정책 및 절차의 검토;
 - f. Title IX 총괄책임자를 소개하고 그 역할을 설명하기;
 - g. 평등총괄책임자를 소개하고 그 역할을 설명하기;

- h. 괴롭힘 정책 및 절차 또는 괴롭힘 관련 기타 주제에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고 이와 관련한 우려들을 다룰 수 있는, 각 학교에서 지정된 교직원을 확인;
- i. 학교 관계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Title IV, Title IX, 그 실행 규정 및 OCR 지침의 의무 사항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며 효율적이고 적절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구의 정책 및 연방 및/또는 주의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함;
- j. 괴롭힘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교직원은 가해자에게 교육구에서는 성별비순응 또는 성적지향성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사실 및 이에 반대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
- k. 학생들의 존엄성 및 자아 존중감과 이 학생들의 보호된 특성을 분명하게 긍정하는 발언은 교육구 정책과 일관되며, 평등자문위원의 권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
- 4. 교육구는 신고를 감독하고 괴롭힘을 조사하며 교내 괴롭힘 정책 및 절차에 관련한 교직원과 학생의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는 최소 한 명의 관리자 또는 교직원("지시인")을 각 중고등학교에 지정하였다.
 - a. 매 학년 첫날까지, 교육구는 각 학교 지시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웹 사이트와 각학교의 교무실에서 눈에 잘 띄는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만일 지시인이 연도별학생 및 직원 안내서가 인쇄되기 전에 지정되었다면, 교육구는 지시인의 이름을 안내서에 포함해야 한다. 만일 지시인이 안내서가 인쇄될 시점에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교육구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각 지시인의 연락 정보를 전부 안내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 DPblainehs@anoka.k12.mn.us)
 - b. 교육구 내의 각 중고등학교들은 이 지시인을 매 학년 시작 때 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소개해야 한다.
- 5. 매 학년 첫날까지, 그리고 이후 이 화해명령에 따라 매년 최소 한 번씩, 교육구는 평등자문위원, Title IX 총괄 책임자, 평등총괄책임자와 함께 지시인들 모두에게 괴롭힘에 관한 추가적 의무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해야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성적지향성 및/또는 성별정체성 또는 비우호적인 환경에 관련해 우려를 가지고 있어 표현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학생과의 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를 포함하여, 괴롭힘의 대상이 된 학생들과의 대화에 관한 상세한 지침; 및
 - b. 자신의 급우들을 성 및/또는 성적지향성에 근거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들 과의 대화에 관하여, 이 학생들의 나이에 맞는 개입의 예시를 포함한 지침;

6. 교육구는 평등자문위원과 함께 Section V.D.1-5에서 의무로 하는 연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한 교수자 교육(train-the-trainer) 사례를 개발할 수 있다. 만일 교육구가 교수자 교육 사례를 사용한다면, 교육구는 교육을 이끌 모든 개인이 충분히 교육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평등자문위원과 교육구가 교수자 교육 사례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및 절차에 관해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교육구는 미 당국에 이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미 당국은이 화해명령의 정신과 규정 및/또는 적용 가능한 민권법에 일치하지 않는 교수자 교육 사례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필요

- 1. 교육구는 상담 교사 또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인가를 받은 다른 전문가들이 수업 시간 동안 항상 근무하며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2. 2012년 9월 4일까지, 교육구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및 면허를 보유하였고, 임상 경험이 있는 인가된 개인을 상담가("정신 건강 상담가(Mental Health Consultant)")로 고용하거나 지정할 것에 동의한다. 정신 건강 상담가는 우울증, 불안, 상해 및 기타 자해 행동 및/또는 자살성 사고(suicidal ideation) 또는 자살 시도를 포함하되 거기에 국한되지 않은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괴롭힘의 대상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교육구 내의 현재 실행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할 것이다.

우리 반 학생이 나에게 커밍아웃했다

- 이윤승(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교사)

성소수자 학생의 커밍아웃을 경험한 교사로서 발제를 맡은 후, 자문해봤다. '나의 무엇이 그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했을까?'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해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그동안 나에게 자신의 성에 대해 말해준 학생은 여섯 명이었다. 그들 중 먼저 한 명에게 먼저 물었다. 그녀의 답은 그냥 왠지 말해야 될 것 같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란다. 그 답도 한참의 시간동안 한동안의 고민 끝에 나름의 이유로 밝힌 것이었다. 필연적인 어떤 것은 없었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잘 모르겠어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집에 가다 생각했었는데 왜그랬는지는 모르겠던데요.'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나도 모르고 그들도 모르니 내 나름의 썰로 풀어볼 수밖에 없다. 이하의 글은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분석의 결과는 절대 아님을 먼저밝힌다.

교사로서 10년 가까지 지냈고 많은 학생들과 대화 또는 상담을 했다. 학기 초에 새로운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 하루에 한 명꼴로 상담시간을 갖는다. 3월은 그래서 상담으로 모든 저 녁시간을 보낸다. 아내와 딸에겐 무척 괴로운 한 달이다. 적게는 세 시간 많게는 여섯 시간정 도 개별상담을 한다.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기보다는 그냥 잡담하는 시간이다. 그래 서 상담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학생과 논다고 보는 것이 맞다. 상담 장소는 교무실일 때도 가끔은 있지만 대개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닌다. 학생이 가장 편한 공간에서 하기 에 거의 장소는 학생이 정한다. 운동장 스탠드, 학교 공원벤치, 잔디밭, 학교 인근 식당, 카페 등등 장소의 제한은 없다.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어떤 학생은 이틀에 걸쳐 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 처음에는 별말 없던 학생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이야기들 중에 연애담이 나올 때가 많고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에 대한 이야 기뿐만 아니라 성폭행의 경험, 가정폭력, 따돌림 등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학기 초에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 들어주는 사람이 그 이야기로 인해 자신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비밀이 아닌 이야기를 할 때 상대의 반응을 보고 갖게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준 담임은 없었다고 한다. 특별히 상담의 기술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난 말하고 듣 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돌에 흥분해가며 얘기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잘 듣다보면 어느새 학생 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확신하게 되는 것 같다.

두 번째 이유는 수업시간에 내가 보인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수학은 매우 좋아하지만 교육과정으로서의 수학은 매우 재미없어하기에 수업시간의 많은 부분을 다른 이야기로 채운다. 정치, 역사, 예술, 문학 등의 이야기를 하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 기말고사가끝난 후의 시간은 특히 더하다. 나에게 기말고사가 끝난 후의 수업이 더 즐겁다. 기말고사 이후 성, 인권, 정치, 노동, 수학사, 예술에 대한 주제를 나열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로 수업을 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성이고 성을 주제로 하는 시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꼭 빠뜨리지 않는다. 수업시간 영화를 볼 때나 수학여행 중 버스 안에서 영화를 볼 때도 퀴어영화나 인권감수성 터지는 영화를 추천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이윤승'이라는 사람과 연관어로 인권을 꼽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내가 찾은 마지막 이유는 나의 조심성이다. 혹시나 나의 말이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까 조심하다보니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폭력적인 언행을 미리 주의한다. 종교적인 배타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 성적 지향의 일반화로 인한 성차별적 언어 등을 쓰지 않는다. 예를들어 '남자친구'라는 말 대신 '애인'으로 바꾸고, 수학시간에 남자와 여자로 집합을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면 남자 여자 대신 이성애자, 동성애자로 바꾸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서 잘 쓰지않는 말을 자주 쓴다. '노동자', '섹스', '공산당', '사회주의', '아나키'와 같은 말을 사용되어야하는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쓴다. 그런 모습이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주제든 금기시 하지 않고 말해도 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다.

여기까지가 내가 나름대로 찾은 성소수자 학생을 편하게 해주는 교사가 된 이유이다. 나의 비합리적인 분석이 옳은 해석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교사와 학생 간에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성애가 일반화되어 성소수자에 대한 일상의 폭력이 존재하는 학교의 모습을 바꾸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단 성소수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학교는 무수히 많은 일반화를 통한 폭력이 자리한 공간이다. 그런 폭력성이 사회의 폭력이 되고 '정상'에 대한 강요로이어진다. 소수로서의 개인은 다수의 정상인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하게 하는 사회의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기꺼이 소수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장애인과 정상인으로 구분하지 않으려는 노력, 성소수자와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구분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공존을 위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분명 영향을줄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소수자에 대한 소수성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한가지 이상의 소수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 다수에 속하기위한 만인의 투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기꺼이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그 도움은 바로 교사 자신의 자유로 돌아올 것이다. 학생들이 가여워서 인

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수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 낸 후에야 국어 교사가 김수영의 '김일성 만세'를 수업시간 활용하고 경제교과에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중요한 챕터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의 인권은 그렇게 다른 이의 인권과 맞닿아 있다.

초등교사인 내가 성소수자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

이기규(서울 수송초 교사, 인권교유을위한교사모임)

1.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와 폭력의 공간, 학교

성소수자에 대한 경멸 조롱, 공포와 폭력이 뒤섞인 교실

교실 공간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성소수자가 조롱이나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중고 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 씩 "너 게이냐?", "너 레즈냐?"라는 식의 말이 들려온다. 호모 같은 경멸적으로 지칭 하는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초등학생 들 입에 오르내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말들은 조롱을 위한 언어일 뿐이다.

뿐만 아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성격의 남학생들은 그가 성소수자이건 아니건 놀림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학교에서 이야기 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든 존중의 의미를 담은 말들은 단 하나도 없다.

성소수자 학생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학생들의 태도가 이러한데 만약 누군 가가 커밍아웃을 하거나 아웃팅을 당하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담임교사에 의해 왕따 당하는 경우도 많다.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성소수자에 대한 공포와 반감을 부추겼고 학교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자유롭게 이야기 되거나 담론화 되지 않고 침묵만을 강요되어 왔다,(아직도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터부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경우 2차 성징과 성에 대한 호기심 성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임에도 성교육은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 그쳐있고 성소수자라는 말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 금기시 되어 왔던 상황에서 학교 내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어린이 청소년의 성적인 고민을 따라가지 못한 성교육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교육 시간이 보여주는 풍경 속에는 아예 침묵하거나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는 학생들과 형식적인 성교육 내용을 하기에 급급한 교사의 모습이 보인다. 그 내용도 남녀의 신체적 차이나 임신 수정 등의 이야기,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좀 더 준비할 여유가 있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원론적 차원의 성평등 교육정도가 포함되는 수준이다. 자신의 성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성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적 취향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 성에 대한 터부와 편견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성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교육은어디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다양한 성적인 고민들을 하기 시작함에도 학교의 성교육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이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을 이야기 할준비가 되었는데 학교는 아직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투명인간이 된 학교 안 성 소수자

우리 반 학생이 성소수자라면? 또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성소수자라면? 학교에서는 이러한 가정은 처음부터 부정 당한다. 학교 안 성소수자는 그가 학생이든 교사이든 존재자체를 부정 당한다. 학교 안 성소수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고 있어서는 안 돼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상담 매뉴얼 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교사가 성소수자의 차별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찰까지 나서 강력한 통제와 처벌을 학교폭력 문제도 학교 안 성소수자는 예외다. 성소수자가 마음 놓고 자신의 피해 사례를 말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 순간 그는 아웃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학생뿐만 아니다 교사는 어떤가? 성소수자 교사는 그가 아웃팅 당하는 순간부터 교직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가 어떤 스승이었는지는 어떤 학생이었는지는 상관없다.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투명인간이어야 하는 존재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학교는 그들을 더 이상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상담자로서의 준비가 부족한 교사

교사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는 어떨까? 성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동성애를 아직도 질병으로 생각하거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에이즈를 동성애와 연결하는 인식을 가진 교사들도 여전하다. 특히 특정 종교를 가진 교사의 경우에는 그가 전교조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동성애가 학습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에 의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빈번하고 교사에 의한 차별이나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닐까?

이런 사정이니 성소수자 학생 또는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 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상담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거나 의도치 않게 아웃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

서울 학생인권 조례에 있는 성소수자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장이기 보다는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종교 단체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성소수자 학생의 정보를 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가족 안에서 성소 수자가 겪는 어려움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앞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교육계 안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 센터 주민 참여 예산 선정 과정 및 성북구 인권선언 재정 과정에서 들어난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

지난 6월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에 성북구 성소수자 청소년 상담센터 〈무지개 센터〉예산 이 신청되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청소년 대상 교사 상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기본적인 상담지원을 위한 예산 신청이었다. 하지만 주민 참여 예산 선정전부터 소위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예산신청 자체에 대한 비판 광고를 신문지상에 쏟아내기 시작했고 예산 심사가 열리던 이틀간 서울시청 앞에서 일인 시위들을 벌였다. 그들은 〈무지개 센터〉가 "서울시 예산을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데 쓰면 안 되며 대다수 국민의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 했다. 또한 국민 일보 크리스천 투데이 등의 기독교계 신문들은 기사와 사설들을 통해 예산 선정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410개 중에 이렇게 언론과 단체에 집중적인 비난을받은 사업은 〈무지개 센터〉가 유일하다.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무지개 센터〉는 주민참여예산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며 선정되었다. 하지만 2014년 만들어질 〈무지개 센터〉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성북구청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의 항의전화에 시달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구청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일 것인가에 골몰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 2014년 예산이 지원이 끝나면 2015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성북구 인권 선언문 재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성북구 인권 선언은 인권선언 재정을 위한 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1년여 동안의 논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소수자권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노숙인, 감염인, 난민, 북한이탈 주민 등이 포함되었다.

이때부터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의 항의전화와 시위들이 성북구에 쏟아졌다. 지난 10월 14일에 있었던 열린 설명회에서 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비난과 혐오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며 설명회를 방해했고 구청 게시판은 동성애 혐오 글로 얼룩졌다. 그러자 성북 구청에서는 〈주 민인권선언 4주체 연석회의〉를 긴급하게 열었다. 전체적인 성북구 주민선언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하자는 내용의 회의였지만 사실 성소수자 관련 문항을 수정하겠다는 구청의 의지가 다분히 보였던 회의였다. 구의원들은 구청 게시판의 항의 글을 빌미로 성소수자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하였고 지난 1년간 선언문을 만들어온 주민참여단과 인권의원들은 다른 조항에 비행 내용이 대폭 수정된 선언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참여단과 인권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연석회의 안이 마련되었지만 구의회에서 다시 성소수자 조항이 바뀌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결국 연석회의 결정 안은 무시되고 구의회의 의견대로 선언문은 대폭 수정되게 되었다.

제15조 이주민

성북구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주민 자신의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16조 성소수자(원안)

성북구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15조 이주민

성북구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주민 자신의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16조 성소수자(수정 결정)

선언문은 제16조에서 "성북구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결국 성북구와 구의원들은 성북구 주민과는 거의 상관없는 단체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의 협박에 못 이겨 단순한 선언 수준의 내용으로 후퇴되었지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이것조차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언문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는 것 자체를 부정했고 끊임없이 제 16조의 완전 삭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12월 10일 성북구 인권 선언 선포식 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의 수 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온갖 욕설과 고함들로 선포식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의 극단을 보여주었고 우리나라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그들이 제작한 영화 〈시선 시리즈〉와 〈별별이야기〉 안에 들어 있는 성소수자 인권주제 영화 1편 때문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의 항의를 받고 있고 김조광수 감독이 수입한 영화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을 공동체 상영하려던 많은 학교에서는 이들의 항의 전화때문에 상영을 취소하였다. 인권선언을 재정한 성북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성북구 인권사업을 주관하는 감사담당관은 주민 인권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속에 성소수자가 언급된 글과인권 도서 목록에 성소수자 인권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자료집 배포를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성소수자는 껄끄러운 존재고 세상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성소수자가 언급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성소수자는 세상의 없는 유령처럼 숨죽이고 상

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들의 노골적인 혐오와 편견을 드러내는 사건 속에서 필자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 그들이 이 혐오와 편견의 세상에서 견디며 살아가 야 할 참혹한 현실을 언제까지 그냥 지켜봐야 할까?

3. 모든 소수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한국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현장에서 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한국사회의 변화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 모든 소수자가 다양성을 존중받고 자신의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학교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계획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학생의 기본적인 이해와 성소수자 인권 보장, 더 나아가 소수 인권 전반에 대한 교사의 감수성을 높이는 적극적안 교사 교육이 시급하다. 적어도 진보적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소수자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성 평등 교육,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함께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성교육, 아직도 순결주의로 흐르는 성교육, 고착화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성 평등교육과 나아가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대한 긍정성을 기르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에 당당해질 수 있고 서로의 인권을 종중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준비되고 실천해야 한다.

학교 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정 속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은 더욱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소수자 차별 철폐, 권리 보장 운동이 필요하다

단순히 조례에 대한 방어적인 운동이 아니라 조례를 기반으로 학교 내에 소수자 학생의 차별 철폐와 소수자 학생 상담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주체 차원의 교육운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소수자가 행복한 학교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단순히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운동으로 교육주체 가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만 우리 사회는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우리반 '그/녀'와 어떻게 만날까? -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모리(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1.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열 명 중 네 명 이상이 성소수자 학생을 만났지만(국가인권 위원회, 2005), 선생님으로서 성소수자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선생님들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이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성소수자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는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 상황이 좋지 않은 학생의 상황을 돕는 방법, 장애를 가진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함께 가는 방법, 말 안 듣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법,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성소수자 학생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맘때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주로 하는 고민은 무엇인지, 성소수자 혐오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면 성소수자 학생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아도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어렵지만, 점점 더 쉬워집니다.

공부할 자료는 많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는 스무 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집 '작은 무지개들의 비밀일기',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교사 가이드북 '선생님! 저 동성애자인 거 같아요!',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렵지 않게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쇄본을 주문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개행동에서는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 모음집'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에서는 각각 '커밍아웃 가이드'와 '트랜스젠더 커밍아웃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선생님들과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티 타임 세미나'를 해 봅시다. 점심 시간 후 수업이 없을 때, 친한 선생님들끼리 둘러 앉아 커피나 차를 마시는 그 시간에 30분 정도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배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자료집을 발제문으로 삼아 이야기를 시작해보아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식 기사,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뉴스 기사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소수자 교사냐고 묻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세미나에 꼭 참여 시키도록 합니다.

3. 수업시간에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수업이 따로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과목 수업 시간에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북아일랜드의 'Cara Friend'와 'The Rainbow Project'가 펴낸 '평등한 교육을 위한 가이드(Education Equality Curriculam Guide; Supporting teachers in tackling homophobia in school)'에서는 학교 행사와 조례는 물론 역사, 지리, 종교, 음악, 미술 수업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성소수자 혐오를 다룰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 음악 수업에서 동성애자였던 차이코프스키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거나, 미국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예방 캠페인인 "It Gets Better"의 노래를 함께 불러보면서 음악의 치유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2. 미술 시간엔 그리스와 로마 미술에 표현된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표현의 자유가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역사 수업 시간엔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의해 희생된 동성애자들에 대해.
- 4. 지리 시간엔 종로나 이태원, 홍대와 같은 성소수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해,
- 5. 경제 시간엔 '핑크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6. 사회문화, 정치 시간엔 좀 더 직접적으로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군형법을 이야기하면서 성소수자가 노동권, 가족구성권 등 사회/문화적 권리를 차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 7. 과학 시간에 영화 '킨제이 보고서'를 함께 보며 과학자가 가져야 할 편견 없는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종족 보존의 본능'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8. 윤리 시간엔 도덕 관념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 혹은 도덕과 정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인지

이야기해볼 수 있고,

9. 미션스쿨인 경우 채플 시간에 민중 신학과 해방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경에 실제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명시한 구절이 있는지, 오늘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가능한 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야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학부모나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다면,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을 없는 학생으로 만드는 수업은 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4. 인권동아리 만들기

인권 동아리를 만들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집니다. 학생들과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동할 수도 있고, 현장 학습으로 인권단체를 방문하거나 인권단체의 활동가를 초청해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부는 'Hoshen'이라는 단체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을 학교에 직접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를 만나기 힘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성소수자를 직접 만나 그 사람이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소수자 친구에 대해 명확한 지지 의견을 밝힐 줄 아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아이들은 쉽게 혐오적인 욕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5.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하기

혼자 힘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교사가 직면하게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수업시간에 아이들의 동성애혐오를 마주했을 때, 혹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 또는 동료 교사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다른 선생님들과의 연락망을만들어서 서로 공유해봅시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Google Groups'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6.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함께 하기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닌 교사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이해하기란 때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 궁금하다면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연락하십시오. 무료로 배포하는 자료집과 가이드북을 받아볼 수 있고, 그 자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권단체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빠르게 전문 변호사나 상담사를 연결해줄수도 있고,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인권단체를 쉴 새 없이 귀찮게 하십시오. 미안하다면 정기후원을 시작하면 됩니다.

7.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 시작하기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아서 이 글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학생의 눈으로 학교를 바라본다면, 남녀로 나뉜 화장실 앞에서 겪게 될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좌절감을, 좋아하는 아이 앞에서 맴돌 수 밖에 없는 동성애자 청소년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행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에서 배포하는 '커밍아웃 좋아요' 스티커를 교무수첩에 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시작해보십시오.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궁금해한다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변화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2.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 - '만약 당신이라면?'

[사례1] 어느 날 짝꿍이 칼 머리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성애에 관한 만화책을 본다며 짝을 바꿔달라고 한다. 변태, 호모랑 같이 계속 앉게 되면 에이즈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사례2] 친한 동료교사가 담당 학생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래 동성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감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한다. '만약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사례3] 가족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져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 신앙심이 충만한 기독교 집안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계신다.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 '만약 당신이라면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례4] 또래 친구들에게 여자 같다 또는 게이같다는 이유로 성적모욕과 괴롭힘을 당하는 남학생이 있다. 호모라고 놀림을 당하며 울고 있는 친구를 봤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사례5] 동성친구와의 가벼운 성 접촉!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한 학생한 명이 조용히 상담하러 왔다. '만약 당신이라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례6] 성교육 시간이다. 다양한 영상을 활용하며 남녀의 몸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장면, 남자 둘이 성행위하는 자세를 학생들과 보며 에이즈에 대해 설명한다. 학생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호모들이 걸리는 에이즈'라며 비웃는다. '만약당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한다면 성정체성과 에이즈에 대해 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매우 어렵지요? 여기서 언급된 사례들은 교직생활을 하는 당신이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각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100% 정답은 없습니다. 단 반드시 사용해야 할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 있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설명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례의 대답을 통해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편견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운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동성애자에게도 청소년 시기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동성애 정체성은 자신이 말하지 않는 이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청소년 동성 애자들을 한층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성에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누구에게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면 쉽게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이탈하려고도 하죠. 때로는 깊은 우울증과 자살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치닫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긍정적으로 자신의정체성을 고민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열린 자세로 대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선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성정체성으로 인한 소외감과 죄책감

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이성애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쉽게 소외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에이즈 전파의 주범에, 가족을 붕괴시키고 어딘가 변태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나 혼자 뚝 떨어진 기분이 들죠.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찾아낸 동성애자 커뮤니티 등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현실은 커뮤니티 모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언제나 이성애 중심적으로 교육하고 친구들은 여전히 동성애를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편견을 조장하기도 하죠. 이런 소외와 죄책감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 가족 간의 불화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만약 가족이 청소년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잘 받아들인다면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커밍아웃을 하거나 아웃팅을 당했을 때, 부모들은 자녀를 호되게 야단치거나 친구와의 연락을 끊고 집에 감금하기도 할뿐더러 심한 경우는 정신병원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 청소년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거부는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3.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폭력

요즘 적잖은 학교가 소위 '동성애 검열'을 합니다. 이는 '동성애=비행청소년'이라는 얼토당 토않은 공식에 기대어 문제 학생들을 잡아내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학교의 폭력입니다. 학교 친구들이 동성애자 학생을 의심하고 왕따를 시키 거나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학생을 불러다 집에 아웃팅 시키거나 성적 모멸감을 주기도 합니다. 아예 학칙으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 다. 이는 청소년 동성애자를 학교 밖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4. 정서적 고통

우울증과 자살 같은 극단적인 행동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되며 불안감과 우울, 소외감을 쉽게 느낍니다. 때문에 우울증을 가지게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시도도 하게 됩니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 위험성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시도가 2배-3배 정도 높고 전체 청소년 자살율의 3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이후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48%에서 76%가 자살에 대해생각하며 29%에서 42% 정도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자살 문제를 연구한 보고서도 위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5. 가출의 위험성

가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적절

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만한 공간도 거의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출은 단지 위의 문제 외에도 학교생활의 어려움, 가족 간의 불화와 같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개인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제될 것은 청소년이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갖추어지는 것이겠죠.

6. 커뮤니티 안의 폭력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의 문제, 때로는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조차 폭력 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는 모든 문제가 동성애자 집단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편견을 버리고 다가가야 합니다. 폐쇄적인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이들이 처한 조건에 기반하여 이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잘못되거나 위험한 상황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열린 상담을 위한 10가지 태도. 이렇게 상담하세요!

1. 내 고민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후 마주 앉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듯 학생이 스스로 교사에게 성정체성에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사가 먼저 동성애 문제에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편안하게 상담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담당 학생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한 중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스스로 동성애에대해 편견이 없고 학생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해하며 돕고자 했으나, 이미 집과 학교에 성정체성이 알려진 상황에서 학생을 접촉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교 바깥에서 여러 번 만나면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벽을 허물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 편견 없이 학생을 대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성정체성 문제로 인해 학교와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선생님이 보호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선생님 또한 사회적 편견에 대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쉽지 않으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2. '문제 학생 지도'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문제는 종종 비행청소년의 일탈행위나 청소년답지 않은 성 문제 등으로 불거져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동성애 자체가 이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이 사회

가 청소년에게 금기시 하는 행동을 낙인찍고자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인 성정체성보다는 학생이 저지른 소위 '일탈행위'에만 주목해서 다그치거나 처벌하는 등의 학생지도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말과 행동들이 동성애자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지요. 교사 개인의 신념을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느끼게끔 해서는 안 되며, 성정체성 고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심스럽게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사와 청소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고민을 나누도록 합니다.

학교에서는 흔히 교사가 위에, 학생이 아래에 있는 권력관계가 나타납니다. 학생에게 가해지는 체벌이나 욕설 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죠. 상담에서도 자칫하면 선생님이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훈계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와 학생은다른 위치에 있으며,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학생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이도 흔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최대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문제를 바라보고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알고있다는 식의 상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중요한 이야기로 여기고 공감해주는 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겠죠.

4. 청소년기의 성정체성을 '교정'하지 말고 함께 '탐색'하세요.

많은 교사들이 겪는 오류 중 하나가 청소년 시기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한 때의 홍역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이런 접근은 학생의 동성애 정체성을 친절하게 '교정'해 주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한 개인의 특성이지 교정되거나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로 자신을 교정하려 했겠지요. 이제는 청소년의 성정체성을 함께 탐색하고 모색해 보세요. 세상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는 앞으로 동성애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성애자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으며, 양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로 살아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이 모든 정체성은 차이일 뿐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정체성은 자기 자신의 결정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열린 자세는 청소년이 빨리 성정체성을 결정 짓고 싶어 하거나 혹은 강박적으로 이러한 고민을 벗어나려고만 할 때 모두 도움이 됩니다.

5. 상담은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추어 진행하세요.

당장 집을 나온 한 고등학생이 계속 학교에 다닐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집에는 가기 싫은데 생활비를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렇듯 상담하는 개인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상담에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계속적으로 상담에 임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뜬구름 잡

는다고 느낄만한 이야기보다는 쉽사리 결정하기 힘든 여러 상황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면 상담에서 더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선생님이 도와주거나 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이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행동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결과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 6. 주변과 소속 집단의 영향력과 친밀함, 도움 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살핍니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경우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큰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 안의 독자적인 룰과역할 등을 따르기도 하지요. 그것이 당장 선생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속단하고 그 곳에 나가지 않도록 권유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그 곳이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가 느낄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을 잘 듣고 이해해 보십시오. 때로 안 좋은 일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희롱이나 폭력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굳이 동성애와 연결시키지 말고일반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때로는 친밀함을 느끼는 집단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혹은 동성애자 인권단체나 청소년 단체 등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알아두었다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7. 상담 장소가 꼭 학교 상담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상담실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때로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 학교가 불편한 공간이라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만한 곳으로 장소를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를 벗어나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편한 관계로 변화를 줘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학생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잘 가는 신촌의 한 커피숍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은 소소하지만 꼭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수 있게 만드니까요. 때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진행하는 활동(일일찻집등)에 관심을 가지거나 청소년 동성애자들끼리 쓰는 은어들을 배워가며(?) 이들의 문화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8.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성적 관심과 섹스를 존중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성교육에서 안전한 성관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적인 행위와 관계를 갖는 것은 무조건 막을 일이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은 동성 간의 섹스와 스킨십이 혐오스럽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동성애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한 형태이며 기쁨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

관계를 가져야함을 강조해 주십시오.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면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9.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숨어서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찾 곤 하죠. 그러다보면 동성애 포르노와 같은 것을 마치 동성애의 전부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선생님이 먼저 추천해 줄만한 인터넷 사이트, 관련 서적 및 영화, 인권단체 등을 소개해 준다면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0.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학생의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로부터 올 압력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커밍아웃 하는 것은 동성애자 개인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럴때 선생님은 학생의 지지자가 되어서 커밍아웃을 하던 하지 않던 그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부모를 설득시키거나 학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맡아야 합니다. 한편 원치 않게 정체성이 밝혀지는 아웃팅은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에도 선생님은 이 문제를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관련 학생을 보호하고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4)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펼칠 수 있는 10가지 행동

1. 모두 이성애자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모든 학생들이 '이성애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은 교실 안에 한 명이라도 존재할 수도 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사람 또한 인권에 둔감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사, 교육 전문가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언어나 태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학생들이 '이성애자'일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하게 된다면, 당신 수업에 있을 수 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은 교실에서 당신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것이고, 또래집단에서 소외될 것이며, 스스로를 별종이라고 생각 하고 고립 될 것입니다.

2. 모두가 평등한 교실과 학교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수업하는 교실이 차별에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평등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학교와 교실에서는 성정체성의 차이를 이유로 혹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

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게는 교실에서부터 성정체성의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말투, 표현, 표정 등을 문화 적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 학생 서로가 평등하다는 것 을 강조하는 교육을 먼저 펼쳐야 합니다.

3. 안전한 학교와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학교, 교실 안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괴롭힘, 두려움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수업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전작업을 갖추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학교는 육체적 폭력은 물론 따돌림, 호모새끼, 계집에 같은 녀석, 선머슴, 변태 등 모욕적 언어를 없애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감수성교육, 인권포스터전시, 인권스티커부착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4. 다양하고 다채로운 서적과 영상매체를 보유해요!

도서관에서 학생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관련 서적은 너무 빈약하기만 합니다. 또한 영상매체는 성소수자를 왜곡하고 있고, 영화는 성소수자들의 삶과 고민을 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도서관 사서(교사)들과 영상매체 관련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성소수자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배려해야 합니다. 서적과 영상매체로 부족하다면, 동성애, 동성애자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인터넷 검색을 함께 해보며, 교육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홈페이지뿐 아니라 여러 성소수자 관련 단체 사이트를 방문해 보며 그들의 삶을 엿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5. 교육자, 교원,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육자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해 프로그램, 성정체성 발달과정 이해 프로그램, 성소수자 학생 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당장 학교에서 실시하기 힘들다면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6. Health Care와 교육을 준비해요!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건강문제'는 단지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성행위로 감염되는 질병'에 관계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학교전문 상담자들과 양호교사 등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임신

이나 성병에 관련된 성교육이 아닌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성교육을 준비해야합니다.

7. 교육자 스스로 모델이 되어야 해요!

행동은 한마디 말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간성에 기초해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종류의 차별에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교 공간 안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의한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보호하는 모습에서, 차이를 존중하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고, 괴롭힘, 따돌림, 혐오범죄를 학생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또한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과 인권감수성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면 스스로 모델이 된 교사를 통해 성소수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8.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해야 해요!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또래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교육자로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편견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는 학생들,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을 찾아가 직접 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 안에서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을 돕고, 정보를 제공하며 평등 교육을 실현할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보십시오.

9. 교육과정(커리큘럼)을 재평가해야 해요!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교육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 교육에서도 성소수자와 관련 이슈를 의식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소수자 관련이슈와 역사를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교육, 책읽기와 사회이슈에 대한 토론 등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교육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모든 학생들(성소수자 청소년들도 포함)은 '배움 속에서 사라지는 편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교육자들은 '가르침의 중요성과 성취'의 가치를 느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을 특별하게만 바라본다면 교실 안과 밖에서 늘 세상의 가장자리에 놓인사람들로만 인식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과정 속에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10. 다양한 학교 내 과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요!

보통 과외 프로그램들은 학생들 그룹, 교실 내 분위기에 맞춰 배치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과외 프로그램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우리 세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성정 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연 프로그램, 모의 상담 프로그램 등을 광범위하게 학 교 내 과외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참고할만한 자료 목록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동성애자인권연대(2012)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다운로드: http://www.lgbtpride.or.kr/youth)

<작은 무지개들의 비밀일기>, 동성애자인권연대(2011) 스무 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인터뷰집 (다운로드: http://www.lgbtpride.or.kr/vouth)

<성적소수자 학교내 차별사례모음집>, 무지개행동(2011)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받는 구체적인 차별 사례들 (문의: 동성애자인권연대 lgbtpride@empal.com 070-7592-9984) (다운로드: 구글에서 제목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선생님! 저 동성애자인 거 같아요!>, 동성애자인권연대(2010)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야기, 상담, 실천방법 (다운로드: http://www.lgbtpride.or.kr/youth)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37가지 질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 센터(2007)

문답식으로 정리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 (문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rcmember@naver.com 0505-896-8080)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2005) 동성애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과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법

(다운로드: http://chingusai.net/school.pdf)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메뉴얼 발간 프로젝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2005)

양질의 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권교육 담당자들이 믿고 참고할 만 한 자료를 제공

(문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rcmember@naver.com ()505-896-8080)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3),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번역

세계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현황 및 이에 대처하는 세계의 경험과 정책 사례 수록 (다운로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자료센터 -> 단행본/보고서 <a href="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Item=&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Item=&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Item=&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Item=&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Item=&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Item=&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Item=&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Item=&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Item=&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cate=&SearchStr="http://www.unesco.or.kr/data_center/sub_02_view.asp?articleid=951&page=1&p

(6) 성소수자 인권단체 목록

- 1. 인권단체
- 동성애자인권연대
- 언니네트워크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2. 법률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3. 정당
-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 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 4. 대학모임(더 많습니다)

-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 5. 기타
- 대구퀴어문화축제
- 레주파
-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